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전기통신업무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절차의 관리·감독 강화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24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4  |
| 1.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계약 발생 시 영업정지 등 제재 ..... | 4  |
| 2.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 신고·이행 및 모니터링 등 의무 .....  | 14 |
| 3. 부정 계약 사실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보 의무 .....    | 21 |
| 4.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  | 26 |
| ※ <참고자료> .....                           | 29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11.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하여 이용자와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본인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니터링 결과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견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 신설).
-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7항 신설).

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8항 및 제9항 신설).

### Ⅲ. 검토의견

1.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계약 발생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br>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br>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br>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br>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br>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br>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br>-----<br>-----<br>-----<br>-----<br>-----<br>-----.<br>-----<br>-----<br>-----<br>-----<br>-----.                           |
| 1. ~ 4의2. (생략)                                                                                                                                                                                        | 1. ~ 4의2. (현행과 같음)                                                                                                                                    |
| <신설>                                                                                                                                                                                                  | 4의3.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관리<br>· 감독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모<br><u>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u><br><u>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u><br><u>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u><br><u>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u> |

|            |                |
|------------|----------------|
| 5. 6. (생략) | 5. 6. (현행과 같음) |
| ② ③ (생략)   | ② ③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활용된 대포폰 적발 건수<sup>1)</sup>도 2022년 53,104건에서 2024년 94,53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과 연루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개통 등을 담당하는 대리점·판매점 등에서의 본인 확인을 통해서 대포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sup>2)</sup>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등)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

1) 브릿지경제, “보이스피싱 온상’ 대포폰 개통, 실시간으로 막는다’, 2025. 3. 24., [https://www.vival00.com/article/20250324501075?site\\_preference=normal&utm\\_source=chatgpt.com](https://www.vival00.com/article/20250324501075?site_preference=normal&utm_source=chatgpt.com)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동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등이 전기통신역무 계약 과정에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본인 확인 절차 위반 계약(타인 명의 계약)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 제재 등 규제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포폰 사용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 시정명령 없는 영업정지 등 처분 가능 규정의 적절성 여부 논의 필요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기존 위반 사유가 고의성·중대성이 큰 사유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인 명의 계약 관련 위반 사유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동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0조제1항제4의3호는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sup>3)</sup>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호), 승인 없이 휴·폐업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4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5호) 등으로,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부정한 통신계약이 다수 발생한 경우가 이러한 사유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사유이며, 또한 제재처분이 적절한 수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특히, 현행법상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고의성이 명확한 부정 등록이나 조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 미이행 등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 소홀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가 고의로 타인 명의의 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위반 사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 해당 부분은 위반 사유를 ‘관리·감독 소홀’로 하고 있어, 고의나 과실의 경중과 관계 없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으면 위반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타인 명의 계약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본인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의 제재 처분 비교>

| 구분    | 위반 사항                                                             | 의무이행수단                      |                                                                            |
|-------|-------------------------------------------------------------------|-----------------------------|----------------------------------------------------------------------------|
|       |                                                                   | 시정명령                        |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
| 현행 법률 | 본인 확인 의무 미준수 (제32조의4제2항)                                          | 본인 확인 의무 미준수 시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영업정지(1년 이내), 등록 취소(전부 또는 일부) 가능                      |
| 동 개정안 |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 소홀로 타인 명의 등 부정한 방법의 통신계약이 다수 발생한 경우 (안 제20조제1항제4의3호) | 시정명령에 대한 제재 처분 없이 영업정지 등 가능 | 타인 명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통신계약 다수 발생 시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1년 이내), 등록 취소(전부 또는 일부) 가능 가능 |

○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4)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동 개정안의 해당 부분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제6호<sup>5)</sup>에 따르면,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92조제1항제1호<sup>6)</sup>에 따르면 현행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과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의무이행 부과자와 이를 위반 시 제재 처분 대상자의 차이 검토 필요

○ 동 개정안의 제32조의4제4항 및 제5항<sup>7)</sup>의 타인 명의 계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의무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의 제20조제1항제4의3호 신설 부분의 제재 처분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의무이행 부과자와 제재 처분 대상자의 차이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sup>8)</sup>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기간통신사업자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924호)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이용 방지 등)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SKT, KT, LGU+ 등)외에도 부가통신사업자(넷플릭스 등)를 포함하는 개념임.

- 동 개정안 제20조제1항제4의3호는 의무 위반 시 제재 대상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제재 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역무 계약과 관련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계약이나 사전승낙을 통해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 제32조의4제4항의 타인 명의 계약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나 같은 조 제5항의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파악하는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준수할 의무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동 개정안 제20조제1항제4의3호 의무 주체와 제재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체계상 일관성을 위하여 의무 부과 조항(제20조제1항제4의3호)이나 제재 처분 조항(제32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주체 변경을 검토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관리·감독, 모니터링 의무 부과와 제재 처분 대상의 비교>

| 구분       | 조항                     | 내용                                                                                                                           | 대상          |
|----------|------------------------|------------------------------------------------------------------------------------------------------------------------------|-------------|
| 의무<br>부과 | 제32조의4<br>제4항 및<br>제5항 | ○ 타인 명의 등 부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제4항)<br>○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역무 계약이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상시 모니터링 의무(제5항) | 전기통신<br>사업자 |
| 제재<br>처분 | 제20조제1항<br>제4의3호       | ○ 관리·감독(제4항)이나 모니터링(제5항)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신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 기간통신<br>사업자 |

□ 법률 유보 원칙상 침익적 규정의 명확성 확보 필요

○ 동 개정안의 해당 부분은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의 명확성·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리·감독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 문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과실이나 어떤 법령·기준 위반이 ‘소홀’에 해당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라는 문구에서도 위법적인 계약이 체결된 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다수’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이통사 차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불법 개통 시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동의한다는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등의 본인확인 절차 책임을 강화해, 관리 소홀로 인한 대포폰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부정 계약 발생 시 시정명령 없는 영업정지 등 처분 가능 규정의 적절성 여부, 의무 부과 대상과 제재 처분 대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법률 유보 원칙상 침익적 규정의 명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 2.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 신고·이행 및 모니터링 등 의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의 대포폰 활용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하여 이용자와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해당 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은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생략)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신설>                                  |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대리                                                                                                  |



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제 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본인 확인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책무성을 제고하게 되어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함.

- 기존의 본인 확인 규정 절차의 준수가 현장(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하고, 관리·감독 기준과 보고라는 구체적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 사업자 부담에 대한 검토 필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현행 법률상 본인 확인 절차 미 준수시 제재 처분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관리·감독 기준 마련,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실질적으로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이 주로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통신 사업자가 계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 법률 유보 원칙상 의무 부과 규정의 명확성 확보 필요

○ 동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과정의 모니터링 실시나 본인 확인 절차에 관한 관리·감독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수범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핵심 의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9)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제4항) 문구에서 관리·감독 기준에 어떠한 내용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하는지

---

9)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명시한 후 하위 법령(시행령 등)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상시 모니터링’(제5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니터링 주기·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니터링 결과 제2항 위반 계약을 발견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제6항)하는 절차와 보고 기한을 하위 법령 위임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가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실질적 관리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사전승낙 부분(안 제32조의4제8항)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사전승낙 규정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하지 않은 계약 발생 시 보고 의무 규정(안 제32조의4제6항)에 대해서도 계약의 보고 대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점의 본인확인 절차 위반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현행 법체계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사전승낙 기준(안 제32조의4제8항)에 대해서 사전승낙 기준에 포함될 사항은 법 체계상 「전기통신사업법」 상 사전승낙 규정인 제32조의14<sup>10)</sup>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sup>11)</sup>.

또한, 부처 간 중복 조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 절차 준수하지 않은 계약 발생 시 보고 의무 규정(안 제32조의4제6항)에 대해서도 계약의 보고 대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

---

10)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추후 이동통신사의 유통점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 사전승낙 규정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모니터링 등 의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자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책무성을 제고한다는 점  
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의 이행  
수단이 필요한지,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의 사항  
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 3. 부정 계약 사실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보 의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부정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7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검토사항

- 동 개정안의 제32조의4제7항 신설 부분은 동 개정안 제32조의4 제6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계약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 계약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부정 계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차단할 수 있음.

○ 또한, 사실조사 결과를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 계약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재 집행과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가능하므로 입법 취지가 타당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 현행 조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재 가능 여부 검토

○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존 조항에 따라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부정 계약에 대한 사실조사와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sup>12)</sup>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2)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

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sup>13)</sup>에 근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제5호나목<sup>14)</sup>에 따르면 가입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를 개통·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있어, 부정계약이나 명의도용 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1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명의를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및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 □ 법체계상 사실조사 관련 조항의 이관 논의 필요

- 동 개정안의 해당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체계상 사실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른 조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앞부분에서 언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의무,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보고된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 계약에 대한 사실조사도 해당 조항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정계약이나 명의도용 계약 등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사실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사실조사 규정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 등의 본인확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사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sup>15)</sup>.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부정 계약 사실조사 및 통보 의무 부분은 사실조사 결과를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계약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제재 집행과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현행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사실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보임.

---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1개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확인 위반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미 진행 중(2024. 6월~)으로, 통상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현장조사, 심결서 확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4.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8항 및 제9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⑨ <u>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u> |

#### ☐ 검토사항

- 동 개정안의 제32조의4제9항 신설 부분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 계약을 이용자와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등)가 해당 대리점<sup>16)</sup>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sup>17)</sup>에 대해

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sup>18)</sup>을 철회하도록 규정하여, 대리점·판매점의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를 예방하고 통신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해당 대리점·판매점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위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 문구의 직접적인 해석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계약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대리점·판매점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16)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17)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1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 처분의 위반 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 철회에 대한 부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승낙 규정인 제32조의14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의 부정 계약 발생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에 대해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점·판매점의 영업활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를 예방하고 통신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을 제한하도록 한 개정안은 최소한의 위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의 조항 이관 의견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 <참고자료 1> 내구제 대출 관련 통계

-자료: 경찰청, '가짜 대출! 개인과 사회를 망치는 「내구제 대출」 주의' 2022. 10. 14.

### □ 내구제 대출 관련 통계

- 통계관리 시스템상으로 별도 추출이 곤란하며, 대포폰 통계 및 일반적 불법사금융 통계(내구제 대출은 미포함)를 제공함

### □ 대포폰 통계

<2017년 ~ 2022년 6월 대포폰(대포유심 포함) 적발 현황(단위: 대)>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br>1월~6월 |
|-------|--------|-------|--------|-------|--------|---------------|
| 적발 대수 | 15,910 | 9,343 | 19,080 | 8,923 | 55,141 | 27,176        |

### □ 불법사금융 통계

<2017년 ~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

| 기 간           | 총계    |       | 대부업법위반 |       | 이자제한법위반 |      | 채권추심법위반 |      |
|---------------|-------|-------|--------|-------|---------|------|---------|------|
|               | 건수    | 인원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 '17년          | 1,554 | 3,292 | 1,062  | 2,401 | 221     | 379  | 271     | 512  |
| '18년          | 1,709 | 3,424 | 1,206  | 2,549 | 279     | 450  | 224     | 425  |
| '19년          | 1,833 | 3,488 | 1,309  | 2,575 | 227     | 383  | 297     | 530  |
| '20년          | 1,592 | 3,423 | 1,030  | 2,362 | 240     | 474  | 322     | 587  |
| '21년          | 1,018 | 2,080 | 524    | 1,209 | 232     | 389  | 262     | 482  |
| '22년<br>1월~8월 | 677   | 1,411 | 321    | 729   | 145     | 276  | 211     | 406  |

## <참고자료 2> 내구제 대출 설명

-자료: 경찰청, '가짜 대출! 개인과 사회를 망치는 「내구제 대출」 주의' 2022. 10. 14.

### □ 내구제 대출 설명

- (개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행위
- (특징) 피해자도 대포폰 등 제공행위로 형사처벌 가능

### <내구제 대출 과정 및 사례>

|                                         | 광고                                                                                                                                                                                                                                                   | 속임                                                                                                                                                                                                                                                                                        | 휴대전화 개통                                                                                                                                   | 피해                                                                        |                                       |                                        |                                         |
|-----------------------------------------|------------------------------------------------------------------------------------------------------------------------------------------------------------------------------------------------------------------------------------------------------|-------------------------------------------------------------------------------------------------------------------------------------------------------------------------------------------------------------------------------------------------------------------------------------------|-------------------------------------------------------------------------------------------------------------------------------------------|---------------------------------------------------------------------------|---------------------------------------|----------------------------------------|-----------------------------------------|
| 과정                                      |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 이용 대출 홍보                                                                                                                                                                                                                                 | 통신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휴대전화 (유심) 개통 요구                                                                                                                                                                                                                                                     |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 개통 후 제공<br>※ 제공된 대포폰 등은 앞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                                                                                    | 피해자의 통신요금, 소액결제 요금 납부 책임 등                                                |                                       |                                        |                                         |
|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급전대출</li><li>▶ 소액대출</li><li>▶ 신속대출</li><li>▶ 휴대전화담보</li><li>▶ 내구제 대출</li><li>▶ 휴대전화 개통 50~300만 원</li><li>▶ 휴대전화 개통 당일 지급</li><li>▶ 휴대전화 소액결제</li><li>▶ 통신사 관계 없이 100만 원</li><li>▶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손에</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즉시 현금 지급, 통신요금 대납으로 추가 피해 없다”</li><li>▶ “휴대전화 개통하면 값을 의무가 없다”</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의자 : 대포폰(유심) 개통 및 중개행위 등 처벌 가능</li><li>▶ 피해자 : 대포폰(유심) 제공행위 등 처벌 가능</li></ul> <p>⇒ 전기통신사업법위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처벌 가능</li></ul> |                                       |                                        |                                         |
|                                         | <b>수령금액(예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개통 당 50만 원 * 총 3대</li></ul> <p>⇒ 총 150만 원 수취</p>                                                                                                                        | <b>피해금액(예시)</b> <table><tr><td>▶ 통신이용료<br/>(월10만 원)*3대*3개월<br/>= 90만 원</td><td>▶ 기기 할부금<br/>(월10만 원)*3대*3개월<br/>= 90만 원</td></tr><tr><td>▶ 소액결제이용료<br/>월100만 원*3대*3개월<br/>= 900만 원</td><td>▶ 추가 기깅값 210만 원</td></tr></table> <p>⇒ 갚아야 할 금액 총 1,290만 원</p> <p>※ 별도 대포폰(유심) 양도행위로 처벌 가능</p> |                                                                                                                                           |                                                                           | ▶ 통신이용료<br>(월10만 원)*3대*3개월<br>= 90만 원 | ▶ 기기 할부금<br>(월10만 원)*3대*3개월<br>= 90만 원 | ▶ 소액결제이용료<br>월100만 원*3대*3개월<br>= 900만 원 |
| ▶ 통신이용료<br>(월10만 원)*3대*3개월<br>= 90만 원   | ▶ 기기 할부금<br>(월10만 원)*3대*3개월<br>= 90만 원                                                                                                                                                                                                               |                                                                                                                                                                                                                                                                                           |                                                                                                                                           |                                                                           |                                       |                                        |                                         |
| ▶ 소액결제이용료<br>월100만 원*3대*3개월<br>= 900만 원 | ▶ 추가 기깅값 210만 원                                                                                                                                                                                                                                      |                                                                                                                                                                                                                                                                                           |                                                                                                                                           |                                                                           |                                       |                                        |                                         |